

서울특별시의회
제333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5. 12.

서울특별시의회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-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
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강조하고 있는
청렴문화 조성뿐만 아니라
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,
청렴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

- 또한, 형식적, 선언적 의미의 정책 대신,
직원들의 자발적, 실질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
‘청렴마일리지 제도’ 등을 규정하여
청렴한 업무처리 및 조직문화 조성을 통한
시민의 신뢰 확보 뿐만 아니라,
권익 보호 구축 등에도 기여하고자
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이에 안 제1조 목적의 경우,
기존 조항에서 명시한 조성 및 확산에서
공직자의 부패방지 강조 및
시민의 권익 보호 규정으로 확대하고자 하며,

안 제2조 정의의 경우,
공직자 확대 및 부패행위 조항 신설하였습니다.

□ 안 제8조의2의 경우,
청렴마일리지 제도 조항을 신설하여,j

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활동 참여도,
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·평가하여
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
가점이나 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

성과평가 등에 반영·관리하는 제도 조항의
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